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4.1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상의 서로에 대한 당사국의 기준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4.2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가 적용된다.

제4.3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수평적 및 분야별 수준 모두에서 규제 대화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양자 협력에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 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여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당사국의 기술규정의 질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정보,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규제 협력과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
 - 나. 적절한 경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 다. 양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접근에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고 기술요건의 수렴 또는 정합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 라.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당사국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양자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3.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이 장의 조건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하는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4.4조

기술규정

1.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대로 모범규제관행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다음에 동의한다.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대로 양 당사국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다.
 - 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 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있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설명한다.

- 다. 당사국이 기술규정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그 기술규정에 대한 목적, 법적 근거 및 취지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 라. 기술규정에 관한 향상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공공 웹사이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고, 특히 당사국의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서면 정보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 지침을,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 마. 기술규정 개발 과정의 일부가 공공 협의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그 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 이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 사.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가 적용하도록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며, 실행 가능한 경우,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리적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기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을 자국의 영역에 걸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5조

표준

1.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아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된 원칙도 고려한다.
2. 양 당사국은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 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의 사용
 - 나. 각국의 표준화 과정, 그리고 당사국의 국가 및 지역 표준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사용 정도, 그리고
 -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표준화에 관하여 이행한 협력 협정, 예를 들어 제3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표준화 문제에 관한 정보

제4.6조 적합성 평가 및 인정

1. 양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정부 지정
 -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인정
 -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수용

2. 특히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양 당사국은 다음을 약속한다.
 - 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들 및 유사한 메커니즘에 관하여 당사국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 나.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다. 인정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정에 관한 국제표준과 예를 들어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및 국제인정포럼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양 당사국의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리고
 - 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1항2호에 맞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요구한다.
3.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고 투명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기술규정의 개발 및 채택에 관하여 설립한 원칙 및 절차는 강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4.7조

시장 감시

양 당사국은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제4.8조 적합성 평가 비용

양 당사국은, 수입상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합성 평가기관의 시설의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을 고려하여, 자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 제2항5호상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제4.9조 표시 및 라벨링

1. 양 당사국은 기술규정이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의 규정을 주목하고,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2. 특히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 가.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라벨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나. 그 당사국은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 다. 그 당사국이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 라. 그 당사국은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수용한 국제명칭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마. 그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이 이에 의해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기보다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4.10조 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2.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
-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 다. 제4.3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규제 대화체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이 상호 동의할 경우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는 것

3.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